



제427회국회(임시회)
제3차환경노동위원회
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공사 비상임이사 신설 등〉

■ 정부제출(의안번호 제5887호)

2025. 7.

환 경 노 동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항진

목 차

I . 개요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1.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신설 등	3
※ 참고자료	9

I. 제안경위

2024년 11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위탁 운영·관리 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해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, 해당 공사의 임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, 환경부장관, 서울특별시시장, 인천광역시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각각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을 비상임이사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신설 등

개정안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으로 비상임이사를 신설하고, 비상임이사를 환경부장관, 서울특별시장,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하고(안 제12조), 이사회 구성에 비상임이사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8조).

[개정안 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12조(임원)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,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.	제12조(임원) ① 공사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1. 사장 1명 2. 상임이사 3명 이내 3. 비상임이사 4명 4. 감사 1명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이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.	③ 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하고,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, 서울특별시장,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.
④ 사장의 임기는 3년, <u>이사</u> 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각각 1년을 단	④ ----- <u>상임이사</u> ----- -----

위로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면권자는 제1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.	-----. -----.
제13조(임원의 직무) ① (생략) ② <u>이사</u>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,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	제13조(임원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상임이사</u>----- -----.
③ (생략) 제15조의2(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) ① (생략) ② 공사의 사장 및 감사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사의 <u>인사</u> 및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.	③ (현행과 같음) 제15조의2(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상임이사</u> ----- -----.
제17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공사의 <u>임원</u> 및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	제17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----- <u>임원(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)</u> -----.
제18조(이사회) ① (생략) ② 이사회는 <u>사장을 포함한 이사</u>로 구성한다. ③·④ (생략)	제18조(이사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사장,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</u>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(1)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 및 운영위원회 구성

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수도권매립지공사법’이라 함) 제12조제1항은 공사 임원으로 사장 1명,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.

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사장과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하고, 이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하며, 현재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음.

[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 현황]

직 위	경력	임 기
사 장	• (前) 인천시·서구의회 의원 • (前)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	2023.8.1 ~ 2026.7.31
감 사	• (前) 서울시 송파구청장	2024.11.18 ~ 2026.11.17
기획본부장	• (前) 인하대 환경공학 산학교수	2024.4.22 ~ 2026.4.21
매립본부장	• (前)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	2022.9.19 ~ 후임자 임명시까지
사업본부장	• (前)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	2024.7.8 ~ 2026.7.7

자료 : 환경부

한편,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, 이사회 의결에 앞서 폐기물반입수수료 등 공사 사업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 조직인 공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.

운영위원회는 주민대표 6인,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1인, 4자(환경부·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) 추천 전문가 2인, 과장급 공무원 7인으로 구성되어 있음.¹⁾

(2) 검토의견

개정안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으로 4명의 비상임이사를 신설하고, 비상임이사로 4자(환경부장관·서울특별시시장·인천광역시시장 및 경기도지사)가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1명을 각각 지정하려는 것임.

비상임이사직을 신설하고 비상임이사로서 수도권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4자에게 지정되는 사람을 포함하게 될 경우, 의사결정시 행정 전반의 책임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만,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첫째, 수도권매립지공사 노동조합은 노조·주민대표 등 공사의 비상임이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,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동법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으므로, 이를 함

1) ※참고자료1: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개요 참조

께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보임.²⁾

둘째, 동 개정안에 대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비상임이사 선임 대상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 1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이에 대하여, 동법 제24조³⁾에 따라 이사회 의결에 앞서 공사의 사업

2) 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3420, 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- 검토보고서 일부 :
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, 비상임이사 중 1인을 노동조합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는 ‘노동이사제’ 도입 의무 대상(공기업, 준정부기관)이 아니므로, 당사자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사뿐만 아니라, 인천·서울·경기 등 핵심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.

참고로, 공사는 2017년 10월 노·사간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이사제를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입하기로 한 후 2년마다 협약을 갱신하여 2017년 10월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, 2025년 1월 기준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별도 마련되어있지 아니한 상태로, 노동이사제 또한 도입하지 아니한 상황임.

[공사 단체협약('17.10.) 중 노동이사제 도입 조항]

제69조2(노동이사제 도입) 공사와 조합은 소통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함께하는 공동운명체로서 “노동이사제”를 기재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입하여야 한다.

자료 : 환경부

3) 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(운영위원회) ①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제1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1명

2. 시·도지사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각 2명

3.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6명

4. 환경부장관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각 1명 및 시·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1명

④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.

⑤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⑥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

2.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, 반입량, 반입 기준 및 반입 대상 구역

3.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공사의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민대표,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,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환경부 또한 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폐기물반입수수료 결정 등 중요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으므로, 주민 추천 전문가를 비상임이사로 추가할 필요에 대하여 3개 시·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546

※ 참고자료 1 :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개요

□ 법적근거

- 「수도권매립지공사법」 제24조(운영위원회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(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

□ 구성

- (위원) 총 17명(위원장 포함)
 - 위원장 : 공사 사장(당연직)
 -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1인
 - 서울시장, 인천시장, 경기도지사가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각2인(6인)
 -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6인
 - 환경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전문가 각1인(2인)
 -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관련전문가 1인
- (최초구성일) '00.10.10, 현행 제15기는 '23.6.1 구성
 - ※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(다만,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)

□ 운영

- 분기별 1회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 회의 개최

□ 주요 심의사항

-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
- 반입 폐기물의 종류, 반입량, 반입기준 및 반입 대상구역
-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기타 공사의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※ 참고자료 2 : 노동이사제 개요

- (목적)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자 중심 의사결정을 견제함으로써 경영 투명성 강화
- (법적근거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·제26조
 - (의무대상) 공기업·준정부기관은 해당기관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(노동이사) 1명을 임명

제25조(공기업 임원의 임면) ③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에서 근로자대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

제26조(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)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(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,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.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(도입사례) 의무대상 공기업·준정부기관 중 76%(66/87개 기관) 도입

구 분		의무대상(기관 수)	도입 현황	비 고
공공 기관 운영법	공기업	32개	도입(29), 미도입(3) ※ 수자원공사 도입	미도입 : 석탄공사, 광해 광업공단, 그랜드코리아레저
	준정부기관	55개	도입(37), 미도입(18) ※ 환경공단, 국립공원공단 도입	미도입 예 : 공무원연금공단, 국민연금공단 등
	기타 공공기관	의무대상 아님	7개 기관 ¹⁾ 도입	기타공공기관 총 240개
기 타		의무대상 아님	서울시* 산하기관 등 * 서울주택도시공사, 서울교통공사 등 13개	조례 제정을 통해 도입

1)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, 서민금융진흥원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한국농업기술진흥원,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,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, 한국임업진흥원

자료 : 환경부